

1. 住宅供給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78號

1.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

가.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을 군지역까지 확대

- 현행규정상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제도는 시급이상에서만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군지역에서는 20배수 청약제한,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중·대형 주택소유자의 1순위 제외, 기당첨자 청약제한 등을 시행할 수 없어 과열경쟁 및 투기소지가 있는 군지역에도 청약예금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나. 청약예금 미실시지역에서 주택의 공급대상을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별로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지역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의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함.

- 현행규정상 주택공급대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

거주하는 세대주로 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하므로 과열경쟁 및 투기유발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수도권지역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의 공급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함.

다. 60㎡ 이하의 주택은 민영주택도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

- 60㎡ 이하의 소형민영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함에도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청약한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순이기 때문에 현행국민주택과 같은 소형인 60㎡의 주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.

라. 공영개발사업에 의하여 단독주택용

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주택공급시 당첨 제한

- 공영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하는 단독주택용 택지의 투기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
- 마. 부실공사방지 및 건축경기 진정을 위하여 입주일자 조정
- 인력·자재난과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경기 진정을 위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설정이 필요하므로 입주일자 조정

2. 의견 제출

이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전화번호: 503-7362)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

- 주소